국제입찰 제외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○ 사업명: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시스템 개선

○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150일

○ 사업예산: 607,010천원(부가세 포함)

2. 국제입찰 제외 사유

❍ 법적근거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제4조(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)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공사(工事)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재판매(再販賣)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.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
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
2.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제외 사유

-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**농식품인증, 안전성 분석, 원산지단속 정보** 등을 관리하는 통합데이터 저장장치 · 백업장비의 구매 및 항공방제, 농약피해분정조정 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, 공공기관의 **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**에 따라 공개될 경우 **농가의 재산보호 및 경영상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**할 우려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국내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함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